공고 제 29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06월 22일

신길제6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곽 *파	곽 *파 1991-06-29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25길 (신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06-11